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8. 3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8.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8.23.
-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5.8.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정원승인에 따른 지방직 부구청장(3급)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구본청 정원총수를 감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증 구본청 정원의 총수 1명 감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94.3.16 개정된 지방자치법부칙제5조에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5.7.1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부칙제3항에는 마포구 부구청장의 직급은 3급 일반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본청 정원총수를 1명 감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출년월일 : 1995.8.23.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정원승인에 따른 지방직 부구청장(3급)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서울

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구본청 정원총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증 구본청 정원의 총수 1명 감축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 제15조, 제103조

○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 부칙제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703호) 부칙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97호) 부칙제2조제1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906명"을 "90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1. 구본청(구청) : 906 명	1. 구본청(구청) : 905 명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9. 4.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3.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 ('95.9.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 조례 관련사항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점 보완·정비 (안 제1조 및 제2조)
- 동장에 대한 주민등록사무 권한위임 제외대상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당해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2조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던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제외되었던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제외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5.8.21.
 제출자 : 마포구청장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조례 관련사항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점 보완·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동장에 대한 주민등록사무권한위임 제외대상중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당해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안, 제2조 제3호)

3. 개정근거

- 주민등록법(1993.12.27. 법률 제4608호) 제2조제2항, 제20조제3항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 제15조, 제95조제1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예산조치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중 제1호의 “영”을 “주민등록법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1.주민등록법시행령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9. 4.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4.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7차위원회 ('95.9.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수임기관에 위임토록 하는 등 위임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안 제2조)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임사무의 종류 94개 사무를 별표로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종전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야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 94.12.20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이 규칙으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권한사무는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여 재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제4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에서 정한 위임사무중 별표 제25호에 규정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6개 사무는 그 근거법인 독물및국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서울시장에게는 권한이 위